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13호

도시관리계획[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]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28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우리 시 6대 신산업거점 중 하나인 양재 R&D 혁신지구의 R&D 공간수요 확충을 위해 2015년 4월부터 양재 R&D 정책방향 마련·추진 중에 있음
- 유통업무설비, 대규모 민간부지 등의 효과적 개발 관리를 위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'R&D 공간확충 방향'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(변경) 필요성이 대두됨
- 이에 선제적으로 개발가이드라인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하여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도시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- ② 토지의 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-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-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III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IV.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

V. 관련도서 : 게재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)

VI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(☎ 2133-8324, FAX 2133-0736, e-mail hoon8657@seoul.go.kr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

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1 - 1호

2021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
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2021년 1월 28일
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

소속	서울특별시 영등포구		직위	(전)의회의원		성명	허홍석
(단위 : 천원)							
본인과의 관계	재산의 종류	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	종전가액	변동액		현재가액	변동사유
				증가액 (실거래가격)	감소액 (실거래가격)		
▶ 토지(소계)			13,389	789	0	14,178	
본인	도로	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남양리 240-1번지 1.00㎡	5	1	0	6	가액변동
본인	전	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남양리 240번지 1,315.00㎡ 중 657.50㎡	11,309	723	0	12,032	가액변동
본인	전	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372-1번지 237.00㎡ 중 118.50㎡	1,695	35	0	1,730	가액변동